

주주 귀하

##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1. 일 시 : 2021년 03월 30일 (화) 오전 9시

2. 장 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번지 평화정공(주) 본관 4층 강당

### 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36기(2020.1.1 - 2020.12.31)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상호변경 및 개정상법 반영) ※ 별첨참조
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

4. 배당내역 : 1주당 예정배당금 180원

### 5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6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7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

- 인터넷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>

- 모바일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/m>

#### 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

- 2021년 3월 20일 오전 9시 ~ 2021년 3월 29일 오후 5시
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#### 다. 전자투표 행사 방법

-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,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

#### 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### 8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주총회참석장, 신분증

- 간접행사 : 주주총회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※ 문의처 : 재무회계팀 TEL (053) 350-6311

#### 9.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

당사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 및 회사 홈페이지([www.phakr.com](http://www.phakr.com))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.

#### 10. 기타사항

- 1주당 180원의 현금배당을 예정하고 있으며,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.
- 주주총회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※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안내사항

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라 주주 여러분과 당사 임직원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정부의 집회 참여 자제 지침에 따라 총회장 직접 내방 보다는 전자투표 또는 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총회장 입구에서 체온측정이 있을 예정입니다. 이때 발열(37.5°C이상) 또는 기타 감염의심증상을 나타내시는 주주님은 총회장 입장이 불가합니다.
- 확진자 발생 등으로 사전 공고된 장소(평화정공 본사 4F 강당) 폐쇄 시, 총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주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※ 비상사태 시 총회장 변경에 관한 안내

코로나19 확산, 총회장 폐쇄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변경 등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, 해당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재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

2021년 3월 15일

평화정공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상태/이재승 (직인생략)

(별첨)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상호변경 및 개정상법 반영)

정관 변경 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1 조(상호) 이 회사는 “ <u>평화정공 주식회사</u> ”라 한다. 영문으로는 <u>PYEONGHWA AUTOMOTIVE Co., LTD (약호 PHA)</u> 라 표기한다.	제 1 조(상호) 이 회사는 “ <u>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</u> ”라 한다. 영문으로는 <u>PHA Co., Ltd. (약호 PHA)</u> 라 표기한다.	사업영역확장 및 과거이미지 탈퇴 등의 취지로 상호명 변경
제 13 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<u>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u>	제 13 조(신주의 동등배당) <u>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</u>	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이 언제 인지와 관계 없이 영업년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구주와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내용 정비
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~② 생략 ③ <u>최대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그밖에 [상법시행령] 제 38 조 제 1 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 ④ 삭제 (2021.03.30) (신설)	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~② (좌동) ③ <u>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u> ⑤ <u>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u> ⑥ <u>제 3 항·제 5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	-개정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8 항 반영 (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위원회위원선임의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)  -개정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7 항 반영 (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)

(별첨)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상호변경 및 개정상법 반영)

### 정관 변경 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
(신설)	<u>제 45 조의 2(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)</u> ① <u>제 45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제 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u>	-개정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2 항 반영 (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반영)
제 47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 ①~⑦ 생략 (신설)	제 47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 ①~⑦ (좌동) ⑧ <u>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</u>	감사위원회 직무 추가 반영 (기재 오류 수정)
(신설)	<u>제 57 조<sup>⑬</sup>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45 조 제 3 항 및 제 6 항의 개정규정(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하며, 제 45 조 제 5 항 및 제 6 항의 개정규정(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</u>	

(별첨)

서면위임장 양식

## 위임장

본 주주는 2021년 3월 30일에 개최되는 평화정공(주)의 제36기 정기주주총회(그 속회 또는 연회 포함)에서 권유자 평화정공(주)가 지정하는 (김성우, 정진용)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\*\*\* 다 음 \*\*\*

1. 주주번호 :
2. 소유주식수 : 주
3. 의결권있는 주식수 : 주
4. 위임할 주식주 : 주
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구분	주주총회 목적사항	찬성	반대
제1호 의안	제36기(2020.1.1-2020.12.31)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		
제2호 의안	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상호변경, 개정상법 반영)		
제3호 의안	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		

### 6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위임

-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목	지시내용

주주명 : (인)  
주인(사업자)등록번호 :  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: 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   시